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9월 1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책 추진을 보다 내실화하고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-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(안 제3조의2 신설)
- 근로 청소년을 사용자로부터 보호를 규정함(안 제3조의3 신설)
-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규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의 증진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책 추진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함

#### 2)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)
  -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
-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(안 제3조의2 신설)
  - 「헌법」과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명시함
- 근로 청소년을 사용자로부터 보호를 규정함(안 제3조의3 신설)
-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규정함(안 제5조의2 신설)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의 증진을 위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시책 추진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